

고 시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30호

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부분개정 고시

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「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」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5월 3일
서울특별시장

1. 기준명 :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

2. 구 분 : 부분개정

3. 개정목적

건설기준 통합코드 제정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-438호)에 따라 상위기준인 표준시방서와 상시 연계가 가능하도록 코드체계를 도입하고 각 분야별 기준의 중복·상충 내용을 수정·통합하여 기준관리의 용이성을 도모하고 건설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.

4. 주요 개정내용

- 가, 기존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총 7개분야 102개 공정을 표준시방서 코드체계에 따라 총 3편, 대분류 14개, 중분류 125개, 소분류 624개, 세분류 290개로 통합·분류
 - 기관코드 : SMCS (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onstruction Specification)
 - SMCS 코드

분 야		전문시방서 코드(SMCS)
공 통 편	공통공사	SMCS 10 00 00
	지반공사	SMCS 11 00 00
	구조재료공사	SMCS 14 00 00
	내진공사	SMCS 17 00 00
시 설 물 편	가설공사	SMCS 21 00 00
	교량공사	SMCS 24 00 00
	터널공사	SMCS 27 00 00
	설비공사	SMCS 31 00 00
	조경공사	SMCS 34 00 00

분 야		전문시방서 코드(SMCS)
사 업 명	건축공사	SMCS 41 00 00
	도로공사	SMCS 44 00 00
	하천공사	SMCS 51 00 00
	상수도공사	SMCS 57 00 00
	하수도공사	SMCS 61 00 00

나.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각 분야별 기준의 중복·상충 내용 수정 및 통합

5. 관리주체 :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(☎ 02-2133-8572)

6. 기타사항

가. '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' 는 소관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작성한 종합적인 시방기준으로서, 단위공사 설계 시 해당공사의 특성과 여건 등에 맞게 「공사시방서」를 작성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전문시방서(Guide Spec)이므로 관계법상 구속력과 계약도서로서의 효력이 없음.

나. 이 전문시방서 및 해당 표준시방서의 고시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

※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(☎ 02-2133-8572)로 문의하여 주시고, 개정 전문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(www.seoul.go.kr) 및 국가건설기준센터(www.kcsc.re.kr)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31호

공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건설부고시 제138호(1977.07.09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최초) 및 강서구고시 제 2005-132호(2005.11.24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최종)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-306호(1993.10.02.)로 공원조성계획 수립(최초)된 공산근린공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, 아래와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8년 5월 3일
서울특별시장